

[별표 9]

수수료(제51조제1항관련)

구 분	금 액
1.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	가.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: 2만원 나.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: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
2.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	가. 신고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: 5천원 나. 신고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: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
3.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	5천원
4.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	가.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: 2만원 나.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: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
5.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(신청에 의한 지정에 한한다)	가.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: 2만원 나.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: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
6.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	가.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: 1만원 나.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: 1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1만원을 가산한 금액
7.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신고	5천원
8.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	5천원